

조선시대 국장(國葬)에 나타난 외(外)와 내(內)의 구분

이욱(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원)

leewk@aks.ac.kr

1. 서론

국장(國葬)은 한 개인의 죽음을 국가 차원에서 슬퍼하고 장례를 치르는 것이다. 이를 좀더 구체화시키면 국장은 한 개인의 죽음을 ‘친족’의 범위에서 벗어나 관민(官民)에 의해서 장례를 치르는 것이다. 국장은 고인의 삶이 공공의 가치에 부합하고, 그의 공덕이 백성에게 두루 미쳐 후대에까지 기억될 만한 자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를 ‘공공의 장례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왕의 죽음을 공적인 질서와 이념 속에서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국왕의 가족을 왕실이라 부르고, 그 아래에 보다 넓은 친척으로 종친이 있다. 이들은 국장의 공식 의식에 대부분 참여한다. 그럼에도 국장이 준비한 의식으로 이들의 감정을 모두 받아내기엔 역부족이다. 여성의 경우 그 참여도 매우 제한적이다. 그리하여 이들은 국장의 공식적인 행사 외에도 별도의 의식으로 국장에 참여하였다.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거행하는 의식을 앞의 것과 구분하여 ‘사적 의례’라 부를 수 있다.

조선시대 국장은 정부(政府)와 왕실의 서로 다른 의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의례는 이 중에서 공적인 부분만을 기록하고 있다. 의례는 도감을 중심으로 한 각 관서들의 역할을 정리한 책이다. 국왕의 전교를 비롯하여 계사, 관문, 이문, 감결 등과 같이 국왕과 신하, 관서와 관서 사이에 오고간 문서들이 의례의 중요한 내용을 차지한다. 그러므로 조선시대 국장을 이해하는 데에는 의례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그것을 뛰어넘어 단편적으로 남아있는 사적 의식까지 살펴보아야한다. 그리고 조선시대 국장에서 공과 사의 경계는 국가와 왕실 관계 속에서 유동적이었다. 이러한 상호관계에 대한 이해 속에서 조선시대 국장의 전모가 드러날 것이다.

본 연구는 조선시대 국장의 진행 과정을 공적 의식과 사적 의식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 구분은 상황에 따라 ‘외’와 ‘내’, ‘공’과 ‘사’로 구분지어질 것이다. 이에 대한 연구는 국장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국가와 왕실, 공과 사에 대한 조선시대 개념을 반성적으로 살펴보아 조선 사회를 이해하는 데에 일조할 것이다.

2. 임종 공간과 내·외의 구분

《예기·상대기》에서는 “제후와 부인(夫人)은 노침(路寢)에서 숨을 거두며, 대부와 세부는 적침(適寢)에서 숨을 거둔다”라고 하였다. 제후는 세 개의 침소를 가지는데 제일 남쪽 바깥쪽에 위치한 정식의 침소를 노침, 나머지 두 곳은 소침(小寢)이라 하였다. 이 노침은 정침(正寢)이라고도 하였는데 연거(燕居), 청정(聽政), 연향(宴享), 종친들의 가사(嘉事), 조회(朝會) 등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¹ 반면 소침은 연침(燕寢)이라고 부르는데 국왕의 일상적인 휴식처이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국왕의 부인이 거처하는 후침(后寢)이 있었다.² 죽음의 마지막 순간을 후침이나 연침이 아닌 노침에서 맞이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국왕의 죽음을 공적인 공간으로 끌어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 국왕이 임종을 맞이했던 공간은 어디일까? 《국조오례의》에서는 국왕의 죽음에 임박하면 다음과 같이 조치하도록 하였다.

“임금이 위급한 상황이면 액정서에서 사정전(思政殿)에 악장(幄帳)과 보의(黼宸)를 설치하고, 내시가 임금을 부축하여 수레에 태워 악장에 나아가 안으로 들어가 궤(几)에 기대어 앉게 한다. 왕세자가 곁에서 시중을 든다. 임금이 재집(宰執), 대신(大臣), 근시(近侍)를 불러서 얼굴을 대해보고 고명(顧命)을 발표한다. 왕세자와 대신들이 고명을 같이 받는다. 이를 마치면 대신들이 물러나와 전위유교(傳位遺教)를 작성한다.”³

위와 같이 《국조오례의》에서는 국왕으로 하여금 사정전에 나아가 죽음을 준비할 것을 요구하였다. 사정전은 경복궁에서 편전(便殿)이라 일컬어지는 곳으로 국왕이 일상적인 정사(政事)를 보는 곳이다. 이는 노침에서 임종한다는 경전의 규정을 따른 것이다. 조선 후기 편찬된 《국조상례보편》에서는 임종의 장소를 창덕궁의 선정전, 경덕궁의 자정전, 창경궁의 문정전으로 명시하였다. 이들 모두는 편전으로서 정사를 보는 곳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조선시대 국왕이 승하한 장소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 조재모, <조선왕실의 정침 개념과 변동>,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20권 6호(통권 188호) 2004.
노침의 뜰[庭]이 연조(燕朝)가 된다. 중국 고대 궁궐은 외조(外朝), 치조(治朝), 연조(燕朝)로 구성되어 있었다. 치조와 연조를 합쳐서 내조(內朝)라고 한다.

2 賀業鉅 저, 윤정숙 역, 《중국 도성 제도의 이론 - 《주례·고공기》의 도성제도-》, 이회, 1995, 134쪽.

3 《국조오례의》, 흥례, 국휼고명(國恤顧命).

표 1 국왕의 승하 및 빈전 위치

번호	왕	승하일	승하장소	빈전
1	太祖	1408 (태종 8) .5.24	창덕궁 광연루	후별실청
2	定宗	1419 (세종 1) .9.26	인덕궁	인덕궁
3	太宗	1422 (세종 4) .5.10	연화방 창경궁	수강궁 정전
4	世宗	1450 (세종 32) .2.17	영응대군 동별궁	영응대군 사저
5	文宗	1452 (문종 2) .5.14	경복궁 강녕전	경복궁 사정전
6	世祖	1468 (세조 14) .9.8	수강궁 정침	조계청
7	睿宗	1469 (예종 1) .11.28	경복궁 紫薇堂	경복궁 충순당
8	成宗	1494 (성종 25) .12.24	창덕궁 대조전	대조전
9	중종	1544 (중종 39) .11.15	창경궁 환경전	창경궁 通明殿
10	인종	1545 (인종 1) .7.1	경복궁 清讌樓	思政殿
11	명종	1567 (명종 22) .6.28	경복궁 養心堂	경복궁
12	선조	1608 (선조 41) .2.1	정릉동 행궁	정릉동 행궁
13	인조	1649 (인조 27) .5.8	창덕궁 대조전	창덕궁 선정전
14	효종	1659 (효종 10) .5.4	창덕궁 대조전	창덕궁 선정전
15	현종	1674 (현종 15) .8.18	창덕궁 여차	창덕궁 선정전
16	숙종	1720 (숙종 46) .6.8	경덕궁 용복전	경덕궁 자정전
17	경종	1724 (경종 4) .8.25	창경궁 환취정	창덕궁 선정전
18	영조	1776 (영조 52) .3.5	경희궁 집경당	경희궁 자정전
19	정조	1800 (정조 24) .6.28	창경궁 영춘전	창경궁 환경전
20	순조	1834 (순조 34) .11.13	경희궁 회상전	경희궁 장락전
21	헌종	1849 (헌종 15) .6.6	창덕궁 중희당	창경궁 환경전
22	철종	1863 (철종 14) .12.8	창덕궁 대조전	창경궁 환경전

조선초기 국왕은 생전에 왕위를 물려주었기 때문에 말년에 정궁(正宮)보다 별궁에 기거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종은 인덕궁⁴의 정침에서 승하하였고, 태종은 연화방의 신

4 조선 건국 후 태종이 한양에 건축하였던 궁궐 중 하나이다. 정종이 왕위에 물러나 이곳에 주로 거주하였다.

궁에서 승하하였다. 세조는 수강궁 정침에서 승하하였다. 세종은 궁궐 밖에서 승하하였다. 강녕전에서 승하한 문종부터 승하의 공간이 궁궐 내 안정적으로 자리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조선의 국왕은 창덕궁의 대조전(大造殿)에서 승하한 경우가 많았다.(성종, 인조, 효종, 철종) 창경궁의 경우엔 내전인 환경전과 그 주변의 영춘전, 환취정⁵에서 중종, 정조, 경종이 승하하였다.

위와 같이 조선시대 국왕은 《국조오례의》의 규정에 정해진 임종의 장소는 실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오히려 국왕들은 내전(內殿)에서 임종을 맞이하였다.⁶ 사정전을 비롯한 편전이 상례의 공간으로 드러나는 것은 성빈(成殯) 때부터이다. 즉, 편전은 빈전의 장소로 주로 활용되었다. 그러므로 조선시대 국왕은 대체로 내전에서 승하하여 목욕과 염습을 마친 후 빈전인 편전으로 옮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렇게 공간이 이원화됨으로 인하여 국왕의 임종은 공적인 성격이 약화되지 않을 수 없다. 궁궐에서 내전은 중전이 주로 거쳐하는 곳이기 때문에 외관(外官)의 관원들이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이러한 사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중종의 국장이다.



1544년에 중종이 사망하였다. 재위 말년에 창덕궁에 있었던 중종은 1544년 11월 10일에 병으로 창경궁으로 피전(避殿)하였다.⁷ 그리고 11월 15일에 환경전(歡慶殿)에

5 창경궁 통명전 북쪽 언덕에 있던 정자이다.

6 이런 측면에서 《국조오례의》 규정과 달리 조선시대에는 내전(內殿)이 정침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조재모, 앞의 논문, 196-197쪽).

7 《중종실록》 중종 39년 11월 10일(을사).

서 승하하였다. 환경전은 임금의 침전이다. 통명전, 경춘전, 양화당과 더불어 창경궁의 내전을 구성하는 곳이다. 국왕이나 그의 주변에 있는 왕실 가족을 염두에 둔다면 이러한 공간의 설정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내외의 구분이 명확하였던 당시에 이러한 공간 설정은 조선시대 국장에 큰 과제를 던져주었다. 대신을 비롯한 신하들이 국왕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기 때문이다.

중종의 경우 승하하기 며칠 전부터 국왕은 위급한 상황에 처했다. 승하한 당일에는 정부와 육조의 당상관 전원이 빈청에 모여 있었고, 양사(兩司)와 홍문관, 시강원의 관원들은 명정전 뜰에 있었고, 백관 역시 궐내에 모여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날이 어두워지자 여러 신하들이 흠어지지 시작하였는데 의녀(醫女)가 내전으로부터 나와 상의 증후가 위급하다고 전하였다. 그리고 조금 후에 내전으로부터 곡소리가 나오고 아울러 부음이 약방에 전달되었다.⁸ 이로써 종친, 재상, 백관들이 곡을 하고 대책을 논의하였다. 곧이어 내전에서 중관(中官)이 나와 《가례》를 급히 들여보내라는 명령을 전하여 승정원에서 초상에서 졸곡까지의 필요한 의주를 적어 전달하였다. 이런 것들은 신하들이 국왕의 임종을 지켜보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임종 후 수행해야 할 국장 절차에서 신하들이 배제된 상황을 보여준다.

이는 염습할 때 신하들의 입시(入侍) 문제로 구체화되었다. 좌의정 홍언필은 성종이 승하했을 때 규정에 따라 빈전도감에서 들어가 염습할 것을 청하였지만 자전(慈殿)은 전례에 따라 염습 때 들어오지 말 것을 명하였다.⁹ 그리하여 중종의 습의는 외관이 배제된 채 앞서 들여보낸 습의주(襲儀註)를 가지고 내시들이 진행하였다. 신하들은 소렴(小斂) 때 다시 전례에 의거하여 들어가 참여할 것을 청하였지만 역시 거절당하였다.¹⁰ 결국 신하들이 국상 참여는 대렴 때부터 자전의 허락을 받아 겨우 가능하였다.¹¹ 하지만 이때에도 대렴에 직접 참여하기보다 신하들은 환경전 앞에 엎드렸다가 대렴이 끝나자 들어가 곡하고 나왔다. 대렴전은 내전에서 거행하였다.¹² 대렴을 마친 대행왕의 상(床)을 내시들이 받들고 빈전에 나아가 재궁에 안치한 후 빈전의 찬궁에 모셨다. 이렇게 내전에서 임종을 한 당시 초종의 모습을 사관은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옛날에 임금이 반드시 정침에서 흥한 것은 부인의 손에서 운명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지금 대행 대왕은 이미 정침에서 흥하지도 못하고 대신이 고명을 들을 수도 없었으니, 이미 후세에 좋은 모범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고 옛날 제왕

8 《중종실록》 중종 39년 11월 15일(기유).

9 《중종실록》 중종 39년 11월 16일(신해).

10 《중종실록》 중종 39년 11월 16일(신해).

11 《중종실록》 중종 39년 11월 18일(계축).

12 《중종실록》 중종 39년 11월 19일(갑인).

에 대해서 부끄러운 일이다.¹³

한편, 중종의 국장에서는 빈전의 공간 역시 문제를 안고 있었다. 중종이 승하한 직후 중전(中殿)은 문정전(文政殿)을 빈전으로 정하고자 하였다가 곧바로 통명전(通明殿)으로 변경하였다.¹⁴ 문정전은 창경궁의 정전인 명정전 바로 곁에 있는 전각으로 편전(便殿)에 해당한다. 반면 통명전은 내전에 해당한다. 이렇게 내전에 빈전에 설치됨으로 인하여 초종 때와 마찬가지로 관리들이 국상에 참여하는 데에는 매우 불편하였다. 매일 올리는 조석전 때 대전관(代奠官)의 임무를 관리가 아니라 내인(內人)들이 대신하였다. 그리고 당시 대군(大君)의 창진(瘡疹) 때문에 빈전에서 마땅히 올려야 할 삭망전과 속절의 제사를 정지하기도 하였다.¹⁵ 이런 가운데 승려를 들이는 일까지 알려져 신하들의 비판이 거세게 일어났다.¹⁶ 신하들은 여성과 환시들의 무리 속에 둘러싸여서 이단과 사설에 미혹되고 구기(拘忌)로 사로잡힌 상황을 국왕이 법도로써 제한하고 천하의 공의를 따라 국장을 이끌어갈 것을 요구하였다.

중종의 국장이 보여주는 왕실의 사적인 부분과 공적인 부분 사이에 보이는 벽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즉, 초종에서부터 대령까지의 국장 초기 과정에서 외관(外官)의 참여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사정을 임난 이후에 있었던 인조 국장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인조는 1649년(인조 27) 5월 8일 창덕궁 대조전 동침에서 승하하였다. 인조의 국장을 당하여 신하들은 왕세자에게 대행왕의 염습 때 대신을 비롯한 신하들이 입시하게 할 것을 청하였다. 먼저 사간원에서 소렴 때 대신, 승지, 사관들이 입참하지 못하였다며 대령 때에는 대신, 예관, 승지, 사관들을 고례(古例)에 의하여 모두 입시하게 해 줄 것을 청하였다.¹⁷ 여기서 고례는 이제신(李齊臣)이 사관 때 쓴 일기에 기록된 명종의 소렴 때 대신과 승지가 입시한 것을 가리킨다. 그러나 국왕은 《국조오례의》에 실려있지 않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였다. 곧이어 사헌부(司憲府)에서 《국조오례의》 소렴조에 종친과 문무백관들이 비록 전(殿)에 올라가지 않지만 내전(內殿)의 뜰에 입참(入參)한다는 규정을 들어서 대신, 예관, 승지 등이 입시를 요청하였다. 특히情理(情理)로 말한다면 인군과 대신은 머리와 팔다리처럼 한 몸이므로 대신이 염습에 입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¹⁸

13 《중종실록》 중종 39년 12월 1일(을축).

14 《중종실록》 중종 39년 11월 15일(경술).

15 《중종실록》 중종 39년 12월 14일(무인).

16 《중종실록》 중종 39년 12월 15일(기묘).

17 《승정원일기》 인조 27년 5월 10일(무진) 두 번째 기사.

18 《승정원일기》 인조 27년 5월 10일(무진) 세 번째 기사.

또한 예조에서는 두우의 《통전(通典)》을 들어서 대신의 대렴 입시를 주장하였다.¹⁹ 그러나 왕세자는 “고례에 비록 이와 같았을지라도 조종의 성헌(成憲)을 준수하고 익히어 강구할 따름이라고 하였다. 대렴 때 대신과 예관의 입참 역시 명확하게 밝힌 곳이 없으므로 외관이 ‘깊이 들어올’ 수 없다고 하였다.”²⁰

이러한 내외의 분리는 효종의 국장 때에 크게 달라진다. 1659년 효종의 국장 때에는 임종 때부터 신하들이 같이 있었다. 임종을 앞둔 효종이 삼공(三公)과 송시열, 송준길, 역방제조를 불렀고, 이들과 함께 승지, 사관들도 같이 들어갔다.²¹ 그리고 염습을 할 때와 대렴 때에도 대신 이하 여러 신하들이 입시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영조대에 이르러 《국조상례보편》에 게재되어 보다 구체화된다. 이제 《국조오례의》와 《국조상례보편》의 의주를 통해 신하들이 성빈(成殯) 이전에 어떻게 참여하는가를 살펴보자. 초종은 국왕의 죽음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국왕의 죽음이 임박하면 내시가 부축하여 머리를 동쪽으로 누고, 4인이 앉아서 몸을 잡는다. 그리고 햇숨을 입과 코 위에 얹어 숨이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국조오례의》에 의하면 이 의식을 내시가 하도록 되어있다. 반면 《국조상례보편》에서는 종척(宗戚)의 신하가 이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숨이 끊어진 것이 확인되면 안팎의 사람들이 모두 곡을 하였다. 이렇게 내시가 전담하던 일을 종척의 신하가 하는 것은 중용적인 선택이라 할 수 있다. 내시를 배제하면서도 국왕의 몸을 가까이 대하는 것인 만큼 종척의 관계에 있는 신하를 택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종척의 신하가 등장하는 절차로 습의(襲儀)가 있다. 망자의 시신에 옷을 입히는 습의는 《국조오례의》에 내시가 전적으로 거행하는 것으로 나온다. 반면 《국조상례보편》에서 내시의 역할은 상(牀)을 옮기는 것이며 옷가지를 입히는 것은 종척의 신하가 담당하였다.

그렇다면 일반 신하들은 언제 국장에 참여하게 될까? 《국조상례보편》에서는 조신(朝臣)의 입시를 목욕 후로 명문화하였다. 이때 조신은 시원임 대신, 훈신(勳臣), 예조판서, 양사(兩司) 장관, 승지 6원, 옥당과 춘방에서 각 1원으로 제한하였다. 이러한 입시는 소렴, 대렴, 그리고 재궁에 안치할 때도 마찬가지이다.²²

이러한 입시 외에도 대신은 보다 적극적으로 상례에 참여하였다. 함(含)은 망자의 입에 쌀과 진주를 넣는 절차이다. 《국조오례의》에 의하면 사도시(司導寺)에서 쌀을 준비하고 상의원에서 진주를 준비하면 의정(議政)의 대신이 이를 가지고 나아가 전호(殿

¹⁹ 《통전》의 대상(大喪) 초종(初終)조에 대렴을 할 때에는 삼공(三公)이 조계(阼階)로 올라가 재궁(梓宮) 안에 규장(珪璋) 등의 물건을 안치하고 근시(近侍)가 돕는다고 하였다.

²⁰ 《승정원일기》 인조 27년 5월 11일(기사) 두 번째 기사.

²¹ 《효종실록》 효종 10년 5월 4일(갑자).

²² 《국조상례보편》 권1, 습(襲).

戶) 밖에서 내시에게 전달하였다. 내시가 이를 받아 대행왕이 누운 상(牀)에 나아가 손가락으로 쌀과 진주를 대행왕의 입에 넣었다. 그런데 《국조상례보편》에서는 함의 절차에 많은 변화를 보인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변화는 쌀과 진주를 입에 넣는 주체가 왕세자로 바뀐다. 이는 효종의 국장 때 송시열이 주청하여 바뀐 것이다. 그리고 의정이 전호 밖에서 쌀과 진주를 내시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대행왕이 있는 상까지 들고 가서 그곳에서 내시에게 전달한다. 그리고 난 후 의정은 왕세자의 뒤쪽에 서있다. 왕세자가 반함을 수행하면 내시가 돕는다. 이와 같이 내시의 역할은 축소되고 대신 왕세자와 대신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커진 것을 알 수 있다.

3. 관진향(官進香)과 사진향(私進香)

국상을 당한 지 5일째가 되면 빈소가 설치된다. 앞에서 본 것처럼 《국조오례의》에 의하면 승하하는 장소와 빈전이 구별되지 않고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지만 실제로는 두 공간이 분리되었다. 대행왕은 습렴을 끝낸 후 빈전으로 옮겨진다. 빈소에 머무는 시간은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다르지만 빈소의 기능은 동일하다. 빈소는 시신을 매장하거나 화장하기 전에 임시로 모신 곳이다. 고인의 입장에서 보면 빈소는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거쳐하는 공간이다.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곳에서 고인에 대한 추모의 감정을 표현한다. 특히 가족의 범위를 벗어나 생전에 맺었던 다양한 사람들이 이곳에서 고인을 찾는다. 그러므로 빈소는 상례에서 사회적 공간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사회적 성격은 국장에서 빈전의 위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종의 장소와 달리 궁궐 내 편전이 빈전의 공간으로 자주 사용된 것이다.²³

그렇다면 빈전에서는 어떤 의례들이 있을까? 국장은 해당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국, 또는 국제 정세와 밀접한 것이었기 때문에 외국 사신의 조문과 접대가 매우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다. 조선시대 조문을 통한 외교는 중국, 일본, 유구 등의 나라들과 이루어졌지만 중국을 제외하면 지속적이지 못하였다. 국왕이 승하하면 부고를 아뢰는 사신이 중국을 출발하고 이 소식을 접한 중국의 조정에서는 사신을 파견하여 조문하고 시호를 내렸다. 중국 사신의 조문을 ‘분향의(焚黃儀)’라고 하였다. 이 일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5개월의 기간이 이를 위해서만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중국 사신은 시신을 왕릉에 안장한 후에 도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빈전이 아니라 혼전(魂殿)에서 분향의를 거행하였다.

그리하여 조선시대 빈전의 행사는 국내 행사가 대부분이었다. 5개월 동안 빈전에서

²³ 신지혜, 〈조선 숙종대 왕실 상장례 선행 공간의 건축 특성-빈전·산릉·혼전을 대상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114쪽.

거행하는 일은 크게 3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고인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빈전에서는 매일 조석전과 상식을 올리며 그 죽음을 애도하고 그 혼령을 위로하였다. 그 외 매월 삭망과 속절일(俗節日)에도 음식을 올렸는데 이때에는 종친 문무백관들이 참석하였다. 둘째는 재궁의 가칠(加漆)이다. 재궁은 국왕이 승하하기 전에 이미 제작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재궁에 시신을 안치하여 천개(天蓋; 두껍)을 담은 이후부터 재궁의 표면에 옷칠을 더하여 벌레가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재궁을 견고하게 하였다. 찬궁에 보관된 재궁에 옷칠을 더할 때에 장인(匠人)들 외 사왕(嗣王)과 신하들이 참관하였는데 이를 가칠의(加漆儀)라고 하였다. 셋째는 종친과 문무백관의 진향(進香)이다. 이것은 빈소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일종의 조문(弔問)이라 할 수 있다. 문무 백관과 종친들이 빈전에 나아가 향과 제문을 올려 고인을 추모하는 의식이였다.

이 중에서 필자는 진향에 주목하고자 한다. 진향은 주체에 따라 관진향(官進香)과 사진향(私進香)으로 구분되었다. 관진향은 중앙 및 지방의 관원들이 수행하는 진향을 가리킨다. 《국조오례의》 〈흉례〉조에 의하면 진향의 주체는 의정부(議政府), 종친부(宗親府), 의빈부(儀賓府), 그리고 각도의 관찰사들이다.²⁴ 의정부에서는 문무백관을 이끌고 정해진 날에 빈전에 가서 향을 올렸다. 그러므로 중앙의 관서들은 별도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의정부 주도하에 모두 함께 모여 향을 올린 것이다. 지방에 있는 관리들 중 진향에 참여하는 자는 각도의 감사(監司)와 유수부(留守府)의 유수(留守)였다. 이들은 빈전의 진향과 발인 때 회장(會葬)에 참석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들이 빈전의 진향에 모두 참여한 것은 아니다. 빈전의 진향 때에는 경기 감사와 개성부 유수, 그리고 강화부 유수만 참여하였다.²⁵ 나머지 도의 감사는 도사(都事)나 품계가 높은 수령 또는 차관(次官)으로 하여금 진향을 대신하게 하였다. 이것은 신하된 자로 국왕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통을 표현해야 하지만 왕권의 승계로 인한 불안한 정국을 당하여 각 지역의 동요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책이였다.

그 외 관진향을 별도로 행하는 관서로 종친부와 의빈부가 있었다. 종친부는 종실의 봉작, 승습, 관혼상제와 선원제파(璿源諸派)의 인사나 분규 등의 일을 담당하는 관서이다. 이들의 진향에는 대군(大君) 이하 여러 선파인의 문관, 음관, 무관들이 참석했다. 의빈부는 공주(公主), 옹주(翁主), 군주(郡主), 현주(縣主) 등과 혼인한 부마(駙馬)의 일을 관장하던 곳이다. 조선시대 국왕과 왕비 사이에 난 딸을 공주라고 하였으며, 후궁에게서 난 딸은 옹주라고 하였다. 그리고 왕세자의 적녀를 군주라고

²⁴ 《국조오례의》 권7, 흉례, 의정부솔백관진향의(議政府率百官進香儀).

²⁵ 《효종실록》 효종 즉위년, 6월 8일(병신).

하였으며, 서녀를 현주라고 하였다. 이들의 남편은 부마로서 의빈으로 대접을 받았다. 결국, 종친부와 의빈부는 대행왕의 가장 친근한 가족과 그 자녀들을 관장하는 곳이었다. 그리고 정부의 기관을 통해서 공적인 인물로 보호받는 자들이었다.

한편, 전례서에 명문화된 의정부, 지방관, 종친부와 의빈부 이외에서 올리는 진향을 별진향(別進香) 또는 사진향(私進香)이라고 하였다. 대군, 부마, 공주, 옹주, 왕비 또는 왕세자빈의 친척들은 개별적으로 진향을 행하였다. 또한 각 궁가(宮家)에서도 향을 올렸다.²⁶ 관서에서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향을 올리는 경우도 있었다. 성종의 장인이 되는 윤호(尹壕)는 성종의 상을 당하여 돈령부, 충익부, 족친에서 진향을 하였지만 자신의 집에서 마련한 것이 아니라며 별도로 진향을 올렸다.²⁷

왕후가 진향한 사례도 있다. 1468년에 세조의 상을 당하여 정희왕후가 빈전에 나아가 향을 올렸다.²⁸ 그 외 수빈, 소훈 윤씨 등 왕실의 여성들도 향을 올렸다. 예종의 국상을 당하여 왕대비, 대왕대비의 족친, 중궁의 족친이 진향한 기록도 볼 수 있다.²⁹ 한편, 1530년(중종 25)에 승하한 정현왕후(성종비)의 상에서는 국왕[중종]의 진향이 문제가 되었다. 국왕의 진향은 《국조오례의》에 없는 것이고, 진향 외 아침저녁으로 조석전을 올리고 있으므로 합당하지 않다는 대신의 주장에 따라 중종은 진향을 하지 않았다.³⁰ 그리고 중궁 역시 대전과 대등하므로 진향을 하지 않고, 세자, 세자빈 등은 전례(前例)에 따라 진향을 거행하였다.³¹

위와같이 사진향은 왕실의 가족을 근간으로 한 친인척들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졌다. 혈연과 혼인으로 맺어진 가족간의 친밀함은 왕실을 지탱하는 가장 큰 연대감이었으며, 국장에서 그들의 연대감은 사진향을 통해서 구체화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사진향을 바라보는 신하들의 입장은 부정적이었다. 무엇보다도 사진향은 화려하고 사치스러웠기 때문이다. 세조의 국상을 당하여 임영대군(臨瀛大君) 이구(李瑬)이 진향하였는데 이때 사용한 화촉 등의 물건이 화려하고 사치스러웠다.³² 이러한 사치스런 풍조는 망자에 대한 예의와 사람들 간의 상호 경쟁이 결합되면서 갈수록 심해졌다. 상에 올라가는 찬품의 수는 수백 그릇에 이르고, 인삼, 정과, 용안(龍眼) 등 희귀한 물품을 사용하여 그 비용이 백금을 넘었다. 그리하여 성종의 국상 때 예조에서는 각처의 진향에 소용되는 찬품, 화초, 밀초 등을

26 《현종개수실록》 효종 즉위년 16년 6월 11일(경자).

27 《연산군일기》 연산군 1년 2월 22일(병자).

28 《예종실록》 예종 즉위년 10월 5일(신묘).

29 《성종실록》 성종 1년 1월 19일(무술); 《성종실록》 성종 1년 1월 20일(기해).

30 《중종실록》 중종 25년 8월 27일(갑신).

31 《중종실록》 중종 25년 9월 1일(정해).

32 《예종실록》 예종 즉위년 10월 12일(무술).

정한 대로 하고 너무 사치스럽게 하지 말 것을 건의하였다.³³ 이런 비판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 중 하나가 채화(菜花)였다. 진향 때에는 분홍과 자주색 비단으로 꽃을 만들어 꾸미고, 눈이 부시고 화려한 높이의 채화를 과병(果餅)에 꽂았다. 이러한 진향의식은 사치스러울 뿐 아니라 불교와 오랑캐 풍속의 잔재로 간주되어 신하들의 비판을 받았다.³⁴

사진향의 사치는 민폐로 이어졌다. 1673년(현종 14)에 영릉(寧陵, 효종릉)을 천릉할 때 충훈부에서 올린 진향의 제상이 너무 사치스러웠다. 그뿐만 아니라 충훈부가 제향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읍에 나누어 맡김으로써 민폐를 일으켰다.³⁵ 1718년(숙종 44) 5월 사간원에서 올린 상언에 의하면 충훈부에서 진향을 위해 각도에 관문(關文)을 보내어 부조라고 일컬으며 전포(錢布)와 시탄(柴炭) 등을 요구하고 나아가 왕릉 참봉에게도 강제로 징수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진향을 마친 후 남은 재물을 당상관과 낭청이 사사로이 나누어 가졌다고 이들을 파직할 것을 사간원에서 요구하였다.³⁶ 이러한 사정은 종친부에서도 자행되었다. 종친부 역시 진향을 빌미로 여러 도에 재물을 청하였다.³⁷ 그러나 대체로 국왕은 이러한 풍조를 조종조에서 이미 시행하였던 것이라며 삭감하지 않았고, 궁가의 진향은 나라에서 참견할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³⁸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진향은 두 가지 방향으로 수정된다. 첫째는 내부적인 절제를 통한 경비의 축소이다. 1683년(숙종 9)에 승하한 명성왕후(明聖王后; 현종비)는 유언으로 빈전의 음식 공궤의 수를 줄이고, 각도와 각사의 진향을 정지시켰다.³⁹ 1701년(숙종 27)에 승하한 인현왕후(仁顯王后; 숙종비) 역시 진향의 제물을 반으로 줄이라고 유언하였다.⁴⁰ 그리고 영조는 대왕대비였던 숙종비 인원왕후(仁元王后)의 자교(慈教)에 힘입어 진향에 들어가는 한과(漢菓)와 인삼정과(人蔘正果)과 같은

33 《연산군일기》 연산군 1년 1월 5일(기축).

34 《승정원일기》권107, 효종 즉위년 7월 17일(갑술). 사관은 이러한 풍조의 결정적 계기로 인조비 인열왕후를 들었다. 이때 인조가 왕후의 죽음을 애도하여 상을 화려하게 차리자 여러 왕자와 부마에게서도 진향상을 서로 다투어 화려하게 꾸몄다고 한다.

35 《승정원일기》 현종 15년 3월 16일(경진) 여덟째 기사.

36 《숙종실록》 숙종 44년 5월 13일(신유).

37 《경종실록》 경종 즉위년 7월 2일(정묘). 1718년(숙종 44) 경종비 단의왕후의 상을 당했을 때 종부시에서 구례 대로 각 도에 편지를 보내어 진향의 비용을 구하였는데 이때 종부시 제조가 연잉군(영조)였다. 당시 장령 박치원(朴致遠)이 친왕자로서 부조를 구하는 것은 청명한 조정의 아름다운 일이 되지 못한다고 상소한 일이 있다. (《영조실록》 영조 33년 11월 24일(임자).

38 《경종실록》 경종 즉위년 8월 7일(신축).

39 《숙종실록》 숙종 9년 12월 5일(임인).

40 《숙종실록》 숙종 27년 8월 20일(을해).

사치품을 제거하였다.⁴¹

둘째는 사진향을 축소하고 관진향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 경우 사진향의 전체라기보다 일부이지만 그 상징적인 의미는 크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의정부와 지방관을 제외하면 종친부와 의빈부가 관진향에 포함되었다. 그런데 이런 규정과 무관하게 실제로는 돈녕부(敦寧府)와 충훈부(忠勳府)도 진향을 행하였다. 돈녕부는 종친부에 속하지 않는 종친과 외척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던 관청이다. 돈녕부에 속한 친인척이란 왕의 내외후손인 왕친과 선왕비, 왕비, 세자빈의 외척을 가리킨다. 충훈부는 조선시대 나라에 공을 세운 공신이나 그 후손을 대우하기 위해 설치한 관서이다. 이들 공신들은 조선의 개국에서부터 반정, 전란 등 조선 왕조의 역사를 왕과 함께 모여서 이끌었던 인물들이었다. 국휼을 당하면 살아있던 공신뿐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은 별도로 빈전에서 향을 올렸다.

그러나 돈녕부와 종친부의 진향은 공식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중종대는 이들의 진향을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특히 이러한 폐지의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제향비를 마련하는 데에 따른 폐단이 있었다.⁴² 그러나 전례에 없지만 조종조에서 하던 일이라며 이들의 진향은 폐지되지 않았다.⁴³

이들의 진향은 조선후기까지 그대로 지속되었을 뿐 아니라 관진향으로 변모한다. 영조는 1752년(영조 28)에 충훈부를 관진향으로 전환하였고, 1757년(영조 33)에는 돈녕부에서 진향하는 것을 정례화하고 이를 《국조상례보편》에 실도록 하였다.⁴⁴

관진향이란 관아에서 수행하는 진향이란 의미와 더불어 관에서 경비를 제공하는 진향이란 의미가 함축하였다.⁴⁵ 의정부, 종친부, 의빈부, 돈녕부, 충훈부, 그리고 각도의 지방관의 제문과 찬물은 모두 관에서 준비를 하였다. 영조의 국장 때 예를 보면 다음 표와 같이 빈전에서는 각 관서 또는 지방의 진향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각 진향 때에는 봉상시(奉常寺), 내자시(內資寺), 내섬시(內贍寺), 예빈시(禮賓寺)의 관서에서 돌아가면서 찬물을 준비하였다. 진향시 제문(祭文)은 예문관에서 미리 작성하였다. 그외, 택일과 향축 노창, 주시 예조 지위 차비관 4원은 이조에서 차출하였다. 향배 서리 이조에서 택정하여 보내고, 바깥 자리에 배치하는 천막 등은 본부에서 준비. 당일예 대궐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반수가 먼저 향실로 가서 향을

⁴¹ 《영조실록》 영조 27년 11월 23일(을유).

⁴² 《중종실록》 중종 25년 9월 3일(기축).

⁴³ 《중종실록》 중종 25년 9월 4일(경인).

⁴⁴ 《영조실록》 영조 33년 5월 4일(갑오).

⁴⁵ 돈녕부는 1674년(현종 15) 2월 인선왕후의 국장 때 이미 종친부와 의빈부처럼 내자시에서 진향상(進香床)을 공급받았다. (《진향등록》 규12953, 갑인2월 24일) 그러므로 관진향으로 편입된 시점을 좀더 앞당길 수 있다. 숙종 국장 때에는 돈녕부의 진향상은 예빈시에서 준비하였다. 반면 숙종대에는 충훈부에 대한 제향상의 지급에 관해선 언급이 없다. (《숙종빈전도감의궤》 빈전일방, 감결질 경자 7월 초6일).

받아, 다음 당랑과 참반인은 빈전 문밖으로 가서 향축이 오는 것을 지영한 후에 밖의 자리에 나아가 예를 거행하였다.

영조 국장 때에는 특히 기로소가 별도로 진향의식을 거행하였다. 이것은 영조가 51세 되던 해인 1744년에 기로소에 들어간 것을 기억하여 기로소에서 진향을 요청하였기 때문이다.

<표1> 영조 국장 때 진향 일정

월 일	5. 11	5. 15	5. 16	5. 17	5. 22	5. 25	5. 26	5. 27	5. 29	6. 2	6. 6	6. 9	6. 10	6. 12	6. 14	6. 16	6. 19
관 서	국 왕	의 정 부	중 친 부	의 빈 시	돈 영 부	기 로 소	충 훈 부	개 성 부	강 화 부	경 기	황 해 도	평 안 도	강 원 도	함 경 도	충 청 도	전 라 도	경 상 도
進 香 床	대 내	봉 상 시	내 자 시	내 섬 시	예 빈 시	봉 상 시	내 자 시	내 섬 시	예 빈 시	봉 상 시	내 자 시	내 섬 시	예 빈 시	봉 상 시	내 자 시	내 섬 시	예 빈 시

영조 국장 때에도 사진향은 있었다. 사진향은 계속 있었다. 사왕인 정조의 별진향으로 부터王大비전, 혜경궁, 和柔翁主(영조의 10녀), 청연군주(진종의 장녀), 淸璐군주, 趙淑儀房 등에서 사진향을 거행하였다. 이들은 대행왕에게 매우 가까운 가족이었다. 그 외 문무백관 외에 종친, 의빈, 돈령의 친인척 계열과 충훈부의 충신 또는 그 자녀들은 관의 범주에서 진향의식을 거행함으로써 보다 안정적 기반을 가지게 되었다. 이는 사적인 영역에서 사치와 민폐의 문제를 발생시켰던 일부 진향들을 통제하고, 공적인 성격을 부여함으로써 가능한 것이었다.

4. 결론

임종의 공간과 빈전에서 진행되는 진향의 의식 속에서 공적 의례와 사적 의례를 살펴보았다. 공적 의례는 국가의 법전이나 의례집에 명문화된 규정에 기초할 의식이라면 사적 의례는 왕실가의 관습화된 전통을 따라 거행되는 의식을 가리킨다. 그러나 명문화된 규정만으로 이 둘을 구분하기는 어렵다.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국조오례의의 준수와 고례(古禮)에 근거한 개혁의 세력으로 구분되기도 하였다. 오히려 공적 의례는 국왕의 명령을 위임받은 관리들이 주도하는 것이라면 사적 의례는 왕실의 가족들이 비공식적으로 거행하는 의식으로 구분되었다.

전자는 국가 재정에서 경비를 충당하지만 후자는 내수사, 궁방, 개인들이 부담하는 것 역시 큰 차이가 났다.

이러한 공적 의례와 사적 의례는 본고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외상식(外上食)과 내상식(內上食)에서도 볼 수 있다. 상식은 빈전에서 매일 식사 때에 올리는 음식을 가리킨다. 삼사(三司)에서 거행하는 조석전과 달리 상식은 사옹원에서 담당하였다. 그런데 사옹원에서 올리는 것과 별개로 내전(內殿)에서도 식사 때 빈전에 올렸는데 이를 내상식이라 하였다. 내상식은 외상식보다 더 풍성하였는데 이것 역시 영조대에 많은 내외 상식의 중복된 것을 배제하고 찬품의 수를 줄이는 개혁을 단행하였다.⁴⁶

이렇게 조선시대 국장은 내와 외, 관과 사의 구분 속에서 국가와 왕실의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진행되었다. 그러므로 이들 중 한 가지만으로 국왕의 장례식 전체를 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사적 의례로 간주할 수 있는 왕실과 친인척의 의식들에는 유교로 통합할 수 없는 불교나 무속, 민간신앙적인 것들이 혼재해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선 보다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공과 사의 분리 속에서도 그 경계선이 유동적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유신(儒臣)들은 국장에서 견고한 틀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적 영역을 깨뜨려 공적인 부분으로 변경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왕실의 이름으로 보호되는 사적 영역은 비유교적이었다. 그들에게서 불교의 혐의, 사치로 보여지는 욕망의 노출은 사회적으로 배제되어야 할 부분이다. 그리고 훈척의 비대화 역시 부정적인 요소였다. 그리하여 신하들이 국장의 주도권을 잡고자 하였다.

한편, 숙종, 영조 연관을 지나면서 이러한 공적 영역의 확대는 국왕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질 때도 있었다. 국왕은 사적 부분이 비대화되는 것을 제재하고 일부를 공적인 부분으로 전환함으로써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종척(宗戚)의 역할이 증대하고 있었다. 이는 초종과 염습의 과정에서 내시를 대신하는 종친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되었다. 그리고 돈령부와 충훈부의 사진향을 관진향으로 전환시킨 것에서도 종척을 통제와 중시라는 양면의 성격을 볼 수 있었다.

본고에서 다룬 공적의례와 사적의례는 국왕의 임종과 빈전이라는 두 공간에 제한된 것이었다.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발인 이후 산릉과 혼전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시대적으로 볼 때 정조와 그 이후 시대의 것과 비교할 때 내외의 구분이 지닌 역사적 의미가 더욱더 뚜렷이 드러날 것이다. 이에 대해선 차후의 과제로 남긴다.

⁴⁶ 조선시대 국장 중 외상식과 내상식에 관해서는 이육, 〈조선시대 망자를 위한 음식-國喪을 중심으로〉 (《종교문화비평》, 29, 2016) 참조